

부속서 I

엘살바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엘살바도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엘살바도르의 기준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5조(현지주재)
 - 라. 제9.9조(이행요건)
 -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그리고 유보된 기준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4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1. 분야	면세 상업 센터 및 시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엘살바도르 헌법 제95조(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Artículo 95)</p> <p>엘살바도르의 해양항만 면세점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Ley para el Establecimiento de Tiendas Libres en los Puertos Marítimos de El Salvador, Artículo 5)</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 태생의 엘살바도르 국민 및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엘살바도르 항구도시에 면세 상업 센터 또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다만,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그 기업의 파트너 과반수가 외국인인 경우, 그 기업은 엘살바도르 항구도시에 면세 상업 센터 또는 시설을 설립할 수 없다.</p> <p>엘살바도르 항구도시 내 센터 또는 시설 설립 허가는 재정부(Ministerio de Hacienda)의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가설건물의 위치는 항만위원회[Comisión Ejecutiva Portuaria Autónoma(CEPA)]가 결정할 것이다.</p>

2. 분야	공연 예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이주법 제62-가조 및 제62-나조(Ley de Migración, Artículos 62-A y 62-B)</p> <p>입법령 제382호, 1970.5.29, 관보 제64호-227권, 1970.4.10(Decreto Legislativo No. 382, de fecha 29 de mayo de 1970,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64, Tomo 227, de fecha 10 de abril de 1970)</p> <p>행정부령 제16호, 1970.5.12, 관보 제87호-227권, 1970.5.18(Decreto Ejecutivo No. 16 de fecha 12 de mayo de 1970,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 o. 87, Tomo 227, de fecha 18 de mayo de 197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예술가는 국토개발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y Desarrollo Territorial)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종류의 유료 공연도 할 수 있으며, 먼저 그 예술가가 속한 적법하게 설립된 예술분야 직업별 노동조합의 자문 의견을 15일 이내에 구한다. 외국 예술가는 엘살바도르에서 예상되는 총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연수수료 예치금을 해당 조합에 지급한다.</p> <p>외국 예술가 또는 예술가 집단은 첫 공연일로부터 1년 내에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엘살바도르에서 공연할 수 없다.</p> <p>예술가는 음악, 노래, 춤 또는 낭독 공연을 하거나, 직접(예: 라이브) 또는 크거나 작은 규모의 청중 앞에서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공연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활동하는 인이다.</p> <p>선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술가는 해당 조합에 적절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p>

3. 분야	서커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이민법 제62-다조(Ley de Migración, Artículo 62-C)</p> <p>법령 제122호, 1988.11.4, 관보 제219호-301권, 1988.11.25, 제3조(Decreto No. 122 de fecha 4 de noviembre de 1988,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219, Tomo 301, de fecha 25 de noviembre de 1988, Artículo 3)</p> <p>입법령 제382호, 1970.5.29, 관보 제64호-227권, 1970.4.10(Decreto Legislativo No. 382 de fecha 29 de mayo de 1970,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64, Tomo 227, de fecha 10 de abril de 1970)</p> <p>법령 제193호, 1989.3.8, 관보 제54호-302권, 1989.3.17, 제1조 및 제2조(Decreto No. 193 de fecha 8 de marzo de 1989,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54, Tomo 302, de fecha 17 de marzo de 1989, Artículos 1 y 2)</p> <p>서커스 회사에 관한 입법령 제122조 및 제193조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Reglamento para la Aplicación de los Decretos Legislativos 122 y 193 Relativos a Empresas Circenses, Artículos 1 y 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서커스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공연은 티켓 판매로 예상되는 1일 총 수입의 2.5퍼센트와 동일한 공연 수수료를 관련 서커스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p> <p>모든 외국 서커스는 적절한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 이후에는 엘살바도르 서커스기업협회[Asociación Salvadoreña de Empresarios Circenses (ASEC)]에 통보하고 각 공연의 티켓 판매로 얻는 총 수입의 3퍼센트 및 서커스 내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한 깃발, 모자, 티셔츠, 풍선, 사진 및 그 밖의 용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의 10퍼센트를 엘살바도르 서커스기업협회에 지급한다. 외국 서커스는 충분한 금액의 보증금을 엘살바도르 서커스기업협회에 지급한다.</p> <p>엘살바도르로 들어오는 외국 서커스는 산살바도르에서 15일 동안만 공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5일 연장될 수 있다.</p> <p>엘살바도르에서 공연한 외국 서커스는 그 서커스의 출국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재입국할 수 있다.</p>

4. 분야	공연 예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엘살바도르 예술가의 대중공연 참여 및 대중 홍보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에 관한 법령, 입법령 제239호, 1983.6.9, 관보 제111호-279권, 1983.6.15 (Decreto de las disposiciones para regular la explotación de obras de naturaleza intelectual por medios de comunicación pública y la participación de artistas salvadoreños en espectáculos públicos,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111, Tomo 279, de fecha 15 de junio de 1983)</p> <p>법령 제18호, 입법령 제239호 제1조 및 제4조의 대체조항, 1983.6.9, 관보 제7호-282권, 1984.1.10 (Decreto No. 18, Sustitución de los artículos 1 y 4 del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7, Tomo 282, de fecha 10 de enero de 1984)</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종류를 불문하고 예술가가 라이브로 참여하는 대중공연의 경우, 참여하는 외국인 수의 20퍼센트와 동일한 수의 엘살바도르 국민이 참여한다.</p>

5. 분야	항공서비스 -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민간항공기구법 제39조 및 제40조(Ley Orgánica de Aviación Civil, Artículos 39 y 40) 민간항공기구법 기술규정(Reglamento Técnico de la Ley Orgánica de Aviación Civil) 제138조 및 제140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는 외국 항공 운송 당국이 발행하는 인가, 확인증 및 허가에 대한 인정 또는 유효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에 대하여 상호주의 요건을 적용한다.</p> <p>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술직원, 그리고</p> <p>나. 파일럿 및 그 밖의 기술직원</p>

6.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95조 및 제109조(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Artículos 95 y 109)
유보내용	<p><u>투자</u></p> <p>산업 공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집단을 포함한 외국인은 엘살바도르인의 농촌 토지 소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또는 그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농촌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p> <p>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본의 대다수를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파트너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기업은 상기 항의 적용을 받는다.</p>

7.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노동법 제7조 및 제10조(Código de Trabajo, Artículos 7 y 10)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모든 고용주는 직원의 최소 90퍼센트를 엘살바도르인으로 구성할 의무를 진다. 특별한 상황에 노동사회복지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는 엘살바도르인으로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직원의 추가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고용주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기 언급된 부처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엘살바도르 직원을 교육할 의무를 진다.</p>

8. 분야	생산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동조합 일반법에 관한 규정 제6편, 제1장, 제84조(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Título VI, Capítulo I, Artículo 84)
유보내용	<p><u>투자</u></p> <p>생산조합의 경우, 파트너 총수의 최소 75퍼센트는 엘살바도르인이어야 한다.</p>

9.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및 홍보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엘살바도르 예술가의 대중공연 참여 및 대중 홍보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에 관한 법령. 입법령 제239호, 1983.6.9, 관보 제111호-279권, 1983.6.15, 제4조(Decreto de las disposiciones para regular la explotación de obras de naturaleza intelectual por medios de comunicación pública y la participación de artistas salvadoreños en espectáculos públicos.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111, Tomo 279, de fecha 15 de junio de 1983, Artículo 4)</p> <p>법령 제18호, 입법령 제239호 제1조 및 제4조의 대체조항, 1983.6.9, 관보 제7호-282권, 1984.1.10(Decreto No. 18, Sustitución de los Artículos 1 y 4 del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7, Tomo 282, de fecha 10 de enero de 1984)</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에서 제작되는 공중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및 인쇄물을 의미하는 엘살바도르 공공 통신 매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업광고의 제작 및 녹음의 최소 90퍼센트는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한다.</p> <p>다른 중미 당사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제작 또는 녹음한 상업광고는 그 당사국이 엘살바도르에서 제작 또는 녹음된 상업광고에 대하여 유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엘살바도르 매체에서 사용될 수 있다.</p> <p>엘살바도르에 수입되거나 인허가에 의거하여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되고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제 제품, 상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업광고의 경우, 엘살바도르 공공 매체에서 방송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이 규정의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광고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Publicidad)가 징수하는 일회성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p>

10. 분야	전문직서비스: 통관 대리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중미 통일관세법에 관한 규정 제76조(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Artículo 76)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중미국가 국민만이 통관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다.</p>

11. 분야	운송서비스: 해상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해양법 제42조 및 제53조(Ley General Marítimo Portuaria, Artículos 42 y 53)</p> <p>선박항해 및 선원허가에 관한 규정 제32조(Reglamento para la Navegación de Buques y Autorizaciones de Gente de Mar, Artículo 32)</p> <p>노동법 제7조 및 제10조(Código de Trabajo, Artículos 7 y 1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 공화국의 항구 간 항행 및 연안 항행 무역은 자국 국적 선박에 유보된다. 이는 중미 항구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국 국적 선박은 자국법에 따른 자국 국적 선박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을 자국 국적 선박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p>가. 등록되어 있는 선박</p> <p>나. 자국 국기를 사용하는 선박</p> <p>등록을 원하는 선주는 엘살바도르 공화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선주가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은 자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해외에서 설립된 경우, 엘살바도르에 지점이나 자국법에 따른 그 밖의 종류의 영구적 상주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p> <p>외국선박은 엘살바도르 해양등기소[Registro Marítimo Salvadoreño (REMS)]에 등록될 수 있다. 다만, 그 선박들은 사전에 선적국 내에서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해양항만당국(Autoridad Marítima Portuaria)이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엘살바도르 해양등기소의 해당 부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인도 엘살바도르 해양등기소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기구의 관계자가 되거나 해양항만당국이 규제 또는 통제하는 항만 관할권 내에서의 어떠한 직업, 교역이나 작업 또는 활동을 실행할 수 없다.</p>

1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95조 및 제115조(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Artículos 95 y 115) 투자법 입법령 제732호 제7조(Ley de Inversione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732, Artículo 7), 그리고 상법 제6조(Código de Comercio, Artículo 6)
유보내용	<p><u>투자</u></p> <p>다음의 인만이 엘살바도르에서 소규모 상업, 산업 및 서비스 공급에 관여할 수 있다.</p> <p>가. 엘살바도르 태생의 엘살바도르 국민, 그리고</p> <p>나. 중미 당사국 국민</p> <p>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파트너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기업은 소규모 상업, 산업 및 서비스 공급(“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p> <p>이 유보목록의 목적상, 소규모 기업은 미화 200,000달러 이하의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다.</p>

1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신법 제123조(Ley de Telecomunicaciones, Artículo 123)
유보내용	<p><u>투자</u></p> <p>무료 수신 방송 서비스에 대한 양허 및 허가는 엘살바도르 태생의 엘살바도르 국민 또는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기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엘살바도르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부여된다.</p>